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명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06

발의연월일: 2024. 7. 16.

발 의 자:서명옥・박정하・고동진

박준태 • 조정훈 • 백종헌

김성원 · 강선영 · 김종양

김은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의 "치매"용어가 '어리석을 치(痴)'와 '어리석을 매(呆)'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한자어를 사용하여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2011년 이 후 지속되어 왔고,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, 중국, 대만도 "치매"용어 를 인지증, 실지증, 뇌퇴화증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.

보건복지부가 2021년에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국민가운데 43.8%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였고, 2021년 국립국어원의조사 결과 과반 이상(50.8%)이 다른 용어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을 볼 때, "치매"용어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 수도 급증해 2023년 기준 약 98만 명(65세 이상 노인의 10.41%)이 치매환자로 추정되는 상황 속에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

는 더욱 절실한 상황임.

이에 이 법상의 "치매"라는 용어를 "인지증"으로 변경하여 치매 질환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을 없애고,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여 적극적인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함(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).

한편, 현행법상의 "치매안심센터"는 치매 뿐 아니라 비(非)치매·치매고위험군(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), 가족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, "치매안심센터"용어보다 더 대상자가 포괄적인 "인지건강센터"로 변경하려 함.

"인지건강센터"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치매환자 뿐 아니라 고위험군 및 일반주민, 가족도 대상으로 하는 인지건강 관련 다양한 세부사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.
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치매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치매관리법"을 "인지증관리법"으로 한다.

제1조 중 "치매의"를 "인지증의"로, "치매환자"를 "인지증환자"로, "치매퇴치"를 "인지증퇴치"로, "치매로"를 "인지증으로"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""치매"란"을 ""인지증"이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"치매환자""를 ""인지증환자""로, "치매로"를 각각 "인지증으로"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"치매가"를 "인지증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"치매관리""를 ""인지증관리""로, "치매의"를 "인지증의"로, "치매 환자에"를 "인지증환자에"로, "치매에"를 "인지증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"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""을 ""인지증관리 사업수행기관""으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중 "중앙치매센터"를 "중앙인 지증센터"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"광역치매센터"를 "광역인지증센터"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"치매안심병원"을 "인지증안심병원"으로 하며, 같은 호 마목 중 "치매안심센터"를 "인지건강센터"로 하고, 같은 호 바목 중 "치매관리사업"을 "인지증관리사업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"치매관리전달체계""를 ""인지증관리전달체계""로, "치매"를 "인지증"으로, "치매관리전달체계""를 "인지증관리전달체계""로, "치매"를

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"치매관리에"를 "인지증관리에"로, ""치매관리사업""을 "인지증관리사업""으로, "치매를"을 "인지증을"로, "치매환자"를 "인지증환자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치매환자"를 "인지증환자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치매와 치매예방"을 "인지증과 인지증예방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치매관리사업"을 "인지증관리사업"으로 한다. 제4조 중 "치매관리 및 치매환자"를 "인지증관리 및 인지증환자"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중 "치매극복"을 "인지증극복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치매관리"를 "인지증관리"로, "치매를"을 "인지증을"로, "치매극복"을 "인지증극복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치매극복"을 "인지증극복"으로 한다.

제2장의 제목 중 "치매관리종합계획"을 "인지증관리종합계획"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중 "치매관리종합계획"을 "인지증관리종합계획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"국가치매관리위원회"를 "국가인지증관리위원회"로, "치매관리에"를 "인지증관리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"치매"를 "인지증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치매검진사업"을 "인지증검진사업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치매환자"를 "인지증환자"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"치매"를 각각 "인지증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"치매관리"를 "인지증관리"로 하고, 같은

항 제7호 중 "치매환자가족"을 "인지증환자가족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8호 중 "치매관리사업"을 "인지증관리사업"으로, "치매관리 전달체계"를 "인지증관리 전달체계"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"치매관리"를 각각 "인지증관리"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"(국가치매관리위원회)"를 "(국가인지증관리위원회)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치매관리"를 "인지증관리"로, "국가 치매관리위회"를 "국가인지증관리위원회"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"치매"를 "인지증"으로 한다.

제9조제1호 중 "국가치매관리"를 "국가인지증관리"로 하고, 같은 조제4호 및 제5호 중 "치매관리사업"을 각각 "인지증관리사업"으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 중 "치매연구사업"을 "인지증연구사업"으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"(치매연구사업)"을 "(인지증연구사업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치매의"를 "인지증의"로, "치매 연구·개발 사업(이하 "치매연구사업"이라 한다)"을 "인지증 연구·개발 사업(이하 "인지증연구사업"이라 한다)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치매연구사업"을 "인지증연구사업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치매환자"를 "인지증환자"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치매"를 "인지증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"치매연구사업"을 각각 "인지증연구사업"으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"(치매검진사업)"을 "(인지증검진사업)"으로 하고, 같은

조 제1항 중 "치매를"을 "인지증을"로 하며, "치매검진사업"을 "인지증검진 검진사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치매검진사업"을 "인지증검진 사업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치매"를 "인지증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치매검진"을 "인지증검진"으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중 "치매환자"를 "인지증환자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치매환자"를 "인지증환자"로, "치매 치료"를 "인지증 치료"로 한 다.

제12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"치매환자"를 각각 "인지증환자"로 한다.

제12조의3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, 같은 조 제3항 중 "치매환자"를 각 "인지증환자"로 한다.

제12조의4제1항 중 "치매로"를 "인지증으로"로 한다.

제13조의 제목 "(치매등록통계사업)"을 "(인지증등록통계사업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"치매의"를 "인지증의"로, "치매등록통계사업"을 "인지증등록통계사업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치매등록통계사업"을 "인지증등록통계사업"으로 한다.

제13조의2의 제목 중 "치매정보시스템"을 "인지증정보시스템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치매 관련"을 "인지증 관련"으로, "치매안심센터"를 "인지건강센터"로, "치매정보시스템"을 "인지증정보시스템"으로한다.

제14조제1항 중 "치매"를 "인지증"으로 한다.

제14조의2의 제목 중 "치매실태조사"를 "인지증실태조사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치매"를 "인지증"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치매환자"를 "인지증환자"로, "치매에"를 "인지증에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"치매환자"를 각각 "인지증환자"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"치매정보시스템"을 "인지증정보시스템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 중 "치매안심센터"를 "인지건강센터"로 하며, 같은 항 제9호 중 "치매와"를 "인지증과"로 한다.

1. 인지증검진사업

5. 인지증등록통계사업

제16조의 제목 중 "중앙치매센터"를 "중앙인지증센터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치매관리"를 "인지증관리"로, "중앙치매센터"를 "중앙인지증센터"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"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"을 "인지증관리사업수행기관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치매관리"를 "인지증관리"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"치매연구사업"을 "인지증연구사업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"치매관리사업"을 "인지증관리사업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"치매관리사업"을 "인지증공관리사업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8호 중 "치매정보시스템"을 "인지증정보시스템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0호 중 "치매안심센터"를 "인지증정보시스템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0호 중 "치매안심센터"를 "인지건강센터"로 하고, 같은 항 제10호 중 "치매 인식개선"을 "인

지증 인식개선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2호 중 "치매 관련"을 "인지증 관련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 중 "치매와"를 각각 "인지 증과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"중앙치매센터"를 각각 "중 앙인지증센터"로 한다.

제16조의2의 제목 중 "광역치매센터"를 "광역인지증센터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치매관리"를 "인지증관리"로, "광역치매센터"를 "광역인지증센터"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"치매관리사업"을 "인지증관리사업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치매"를 "인지증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치매안심센터"를 "인지건강센터"로하고,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"치매"를 각각 "인지증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"치매환자"를 "인지증환자"로, "치매의"를 "인지증 의"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및 제10호 중 "치매"를 각각 "인지증"으로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"광역치매센터"를 각각 "광역인지증센터"로 한다.

제16조의3제1항 중 "치매"를 "인지증"으로 한다.

제16조의4의 제목 중 "치매안심병원"을 "인지증안심병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치매의"를 "인지증의"로, "치매 관련"을 "인지증 관 련"으로, "치매안심병원"을 "인지증안심병원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치매안심병원"을 "인지증안심병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치매안심병원이 치매전문병동"을 "인지증안심병원이 인지증전문병 동"으로, "치매 관련"을 "인지증 관련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치매안심병원"을 "인지증안심병원"으로, "치매 관련"을 "인지증 관련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치매안심병원"을 "인지증안심병원"으로 한다.

제17조의 제목 중 "치매안심센터"를 "인지건강센터"로 하고, 같은 조제1항 중 "치매예방과 치매환자"를 "인지중예방과 인지증환자"로, "치매안심센터"를 각각 "인지건강센터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치매안심센터"를 "인지건강센터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중 "치매"를 "인지증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치매환자"를 "인지증장자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치매등록통계사업"을 "인지증등록통계사업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"치매"를 "인지증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"치매환자"를 각각 "인지증환자"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의4 중 "치매"를 "인지증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의4 중 "치매"를 "인지증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의4 중 "치매"를 "인지증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"치매관리"를 "인지증관리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치매안심센터의"를 "인지건강센터의"로, "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"를 "인지건강센터에 인지증환자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치매안심센터"를 "인지건강센터"로 한다.

제17조의2의 제목 중 "치매상담전화센터"를 "인지증상담전화센터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치매예방, 치매환자"를 "인지증예방, 인지증환자"로, "치매상담전화센터"를 "인지증상담전화센터"로 하며,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치매상담전화센터"를 "인지증상담전화센터"를 "인지증상담전화센터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치매"를 "인지증"으로 하며, 같은 항

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"치매환자"를 각각 "인지증환자"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"치매"를 "인지증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치매 상담전화센터"를 "인지증상담전화센터"로, "치매 관련"을 "인지증 관련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치매상담전화센터"를 "인지증상담전화센터"로 한다.

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치매관리사업"을 "인지증관리사업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치매연구사업"을 "인지증연구사업"으로, "치매검진사업"을 "인지증검진사업"으로, "치매환자의"를 "인지증환자의"로, "치매등록통계사업"을 "인지증등록통계사업"으로 하며, 같은 항제1호의2 중 "중앙치매센터,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"를 "중앙인지증센터, 광역인지증센터 및 인지건강센터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의3 중 "치매상담전화센터"를 "인지증상담전화센터"로 하며, 같은 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"치매관리사업"을 각각 "인지증관리사업"으로한다.

제19조 중 "치매관리사업"을 "인지증관리사업"으로 한다. 제20조제2항 중 "치매관리사업"을 "인지증관리사업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치매관리법」에 따

- 라 행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에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.
- 제3조(치매관리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지증관리종합계획으로 본다.
- 제4조(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 인지증관리위원회로 본다.
- 제5조(치매정보시스템에 관한 경과조치)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지증정보시스템으로 본다.
- 제6조(중앙치매센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앙치매센터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인지증센터로 본다.
- 제7조(광역치매센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광역치매센터는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광역인지증센터로 본다.
- 제8조(치매안심병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치매안심병원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지증안심병원으로 본다.

- 제9조(치매안심센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치매안심센터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지건강센터로 본 다.
- 제10조(치매상담전화센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는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 지증상담전화센터로 본다.
- 제11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"인지증"이란 「인지증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지증을 말한다.

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"치매"를 각각 "인지증"으로 한다. 제39조의17제1항제13호 중 "치매관리법"을 "인지증관리법"으로, "치매안심센터"를 "인지건강센터"로 한다.

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치매"를 "인지증"으로 한다.

제22조제2항제2호 중 "치매관리법"을 "인지증관리법"으로, "치매안 심센터"를 "인지건강센터"로, "치매환자"를 "인지증환자"로 한다. 제31조제3항제4호 중 "치매"를 "인지증"으로 한다.

③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항제8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사. 「인지증관리법」

④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다목 중 "치매관리법"을 "인지증관리법"으로, "치매환자"를 "인지증환자"로 한다.

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.

제9조제2호 중 "치매"를 "인지증"으로 한다.

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7조 중 "「치매관리법」"을 "「인지증관리법」"으로 한다.

⑦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제8호 중 "치매관리법"을 "인지증관리법"으로, "치매정 보시스템"을 "인지증정보시스템"으로 한다.

⑧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3항제4호 중 "치매관리법"을 "인지증관리법"으로, "치매정보시스템"을 "인지증정보시스템"으로 한다.

제1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치매관리법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 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「치매관리법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치매관리법	인지증관리법
제1조(목적) 이 법은 <u>치매의</u> 예	제1조(목적) <u>인지증의</u>
방, <u>치매환자</u> 에 대한 보호와 지	<u>인지증환자</u>
원 및 <u>치매퇴치</u> 를 위한 연구	인지증퇴치
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	
수립·시행함으로써 <u>치매로</u> 인	<u>인</u> 지증
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	<u>으로</u>
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	
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	
한다.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<u>"치매"란</u> 퇴행성 뇌질환 또	1. <u>"인지증"이란</u>
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	
하여 기억력, 언어능력, 지남	
력(指南力), 판단력 및 수행능	
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	
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	
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	
말한다.	-,
2. <u>"치매환자"</u> 란 <u>치매로</u> 인한	2. <u>"인지증환자"인지증으로</u>
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	
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	

- 터 <u>치매로</u>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.
- 3. "경도인지장애"란 기억력, 언어능력, 지남력(指南力), 판 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 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저하되어 있으나 일상 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 되어 있어 <u>치매가</u> 아닌 상태 를 말하다.
- 4. <u>"치매관리"</u>란 <u>치매의</u> 예방과 <u>치매환자에</u> 대한 보호·지원 및 <u>치매에</u> 관한 조사·연구 등을 말한다.
- 5. "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"이란
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
 가. 제16조의 중앙치매센터
 나. 제16조의2의 광역치매센
 <u>터</u>

다. (생략)

- 라. 제16조의4의 <u>치매안심병</u> 워
- 마. 제17조의 치매안심센터
- 바. 제3조제1항의 <u>치매관리사</u>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단체
- 6. "치매관리전달체계"란 국가 6. "인지증관리전달체계"----

인지증으로	
3	
<u>\</u>	<u>]지증이</u>
	<u> 리"인지증의</u>
	<u>환자에</u> 지증에
<u> </u>	<u> </u>
5. <u>"인지증관리</u>	<u>사업수행기관"</u>
	<u>중앙인지증센터</u>
나	<u>광역인지증센터</u>
다. (현행과	같음)
라	<u>인지증안심병원</u>
마	<u>인지건강센터</u>
	<u>인지증관리사</u>
<u>법</u>	

또는 지방자치단체가 <u>치매</u>관 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<u>치</u> 매관리사업수행기관 간의 역 할 수행 체계를 말한다.

제3조(국가 등의 의무) ① 국가와
지방자치단체는 <u>치매관리에</u> 관
한 사업(이하 <u>"치매관리사업"</u>이
라 한다)을 시행하고 지원함으
로써 <u>치매를</u> 예방하고 <u>치매환</u>
<u>자</u>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
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 여야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<u>치</u> <u>매환자</u>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<u>치</u> <u>매와 치매예방</u>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·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④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 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<u>치매관리사업</u>에 적극

인지증
<u>인</u> 지증관리사업수행기관
· 제3조(국가 등의 의무) ① 인지증관리에 <u>"인지증관리사업"</u>
<u>인지증을</u> <u>인지</u> 증환자
② <u>인</u> <u>지증환자</u>
 ③ <u>인</u> 지증과 인지증예방
 4
이 지존과리사어

협조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<u>치매</u> 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.

제5조(<u>치매극복</u>의 날) ① <u>치매관</u> 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<u>치</u> <u>매를</u>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 년 9월 21일을 <u>치매극복</u>의 날 로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<u>치</u> <u>매극복</u>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·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제2장 <u>치매관리종합계획</u>의 수립 •시행 등

제6조(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 조에 따른 <u>국가치매관리위원회</u> 의 심의를 거쳐 <u>치매관리에</u> 관 한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 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 야 한다.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
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<u>인지</u>
증관리 및 인지증환자
제5조(<u>인지증극복</u> 의 날) ① <u>인지</u>
증관리
인지증을
인지증극복
,
② <u>인</u>
지증극복
제2장 인지증관리종합계획의 수
립·시행 등
제6조(인지증관리종합계획의 수
립 등) ①
국가인지증관리위
<u>원회인지증관리에</u> -

-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<u>치매</u>의 예방·관리를 위한 기본시책
- 2. <u>치매검진사업</u>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
- 3.
 치매환자의
 치료・보호
 및

 관리
- 4. 치매에 관한 홍보 · 교육
- 5. <u>치매</u>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개발
- 6. <u>치매관리</u>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
- 7. <u>치매환자가족</u>에 대한 지원
- 8. <u>치매관리사업</u> 및 <u>치매관리 전</u> <u>달체계</u> 구축·운영을 위한 자 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
- 9. 그 밖에 <u>치매관리</u>에 필요한 사항
- ③ (생 략)
-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
 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
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<u>치</u>
 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

<u>.</u>
②
1. <u>인지증</u>
2. 인지증검진사업
3. <u>인지증환자</u>
4. 인지증
5. 인지증
6. 인지증관리
7. 인지증환자가족
8. 인지증관리사업 및 인지증관
리 전달체계
9인지증관리
③ (현행과 같음)
4
·
الحالم
<u>인지</u>
증관리

"시행계획"이라	한다)을	수립.
시행하여야 한다		

⑤ ~ ⑦ (생 략)

제7조(국가치매관리위원회) 보건 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및 <u>치매관리에</u> 관한 중요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 부장관 소속으로 <u>국가치매관리</u>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를 둔다.
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생략)

③ 위원은 <u>치매</u>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 촉한다.

④ (생 략)

- 제9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국가치매관리 체계 및 제도
 의 발전에 관한 사항
 - 2. · 3. (생략)
 - 4. <u>치매관리사업</u>의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
 - 5. 그 밖에 <u>치매관리사업</u>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
<u>인지증관리</u>
<u>국가인지증관리</u>
위원회
 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현
행과 같음)
③인지증
④ (현행과 같음)
제9조(위원회의 기능)
<u>.</u>
1. <u>국가인지증관리</u>
2.·3. (현행과 같음)
4. 인지증관리사업
4. <u>UNIOUHNIE</u>
<u>인지증관리사업</u>

제3장 치매연구사업 등 제10조(치매연구사업) ① 보건복 지부장관은 치매의 예방과 진 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치매 연구 · 개발 사업(이하 "치매연 구사업"이라 한다)을 시행한다. ② 치매연구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 준지침의 연구 2. 치매 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 스에 관한 연구 3. (생략)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 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 · 연구 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 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.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 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 외파견 및 국내유치 등의 방안 을 마련하여야 한다.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「의료 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 병원(이하 "종합병원"이라 한

제3장 인지증연구사업 등
제10조 <u>(인지증연구사업)</u> ①
<u>인지증의</u>
<u>인지증 연구·개발</u>
사업(이하 "인지증연구사업"이
<u>라 한다)</u>
② 인지증연구사업
1. <u>인지증환자</u>
2. <u>인지증</u>
3. (현행과 같음)
③ <u>인지증연</u>
<u>구사업</u>
 ④인지증연
구사업
· ⑤
·

다),	「人	·회복	ス	사업	법」	제2	조
제3호	.에	따른	사	회복	-기법	인,	ユ
밖의	보	건의	昆	밎	복지	관	·런
단체	로 .	하여급	<u> </u>	치매	연구	사업	을
실시	하게	할	수	있디			

- ⑥ <u>치매연구사업</u> 지원에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치매검진사업) ① 보건복 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<u>치매를</u>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 사업(이하 "<u>치매검진사업</u>"이라 한다)을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<u>치매검진사업</u>의 범위, 대상 자, 검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③ <u>치매</u>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.
 - ④ 국가는 <u>치매검진</u>을 받는 사람 중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<u>치매환자</u>의 의료비 지원

<u>인지증연구사업</u>
⑥ 인지증연구사업
제11조(인지증검진사업) ①
인지증을
<u> </u>
② <u>인지증검진사업</u>
,
③ 인지증
· ④ <u>인지증검진</u>
제12조(인지증환자의 의료비 지

사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<u>치매환자</u>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<u>치매 치료</u>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지원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2조의2(<u>치매환자</u>의 가족지원 사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<u>치매환자</u>의 가족을 위한 상 담·교육 프로그램을 개발·보 급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2조의3(성년후견제 이용지원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<u>치매</u>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「민법」에 따라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,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- 1. (생략)
- 2. <u>치매환자</u>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

원사업) ①
<u>인지증환자</u>
<u>인지증 치료</u>
<u>.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12조의2(<u>인지증환자</u> 의 가족지
원 사업) ①
-인지증환자
.
② (현행과 같음)
제12조의3(성년후견제 이용지원)
① <u>인</u> 지
<u> 증환자</u>

우

- 3. (생략)
- ② (생략)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<u>치매</u> 환자의 치료·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·법인·단체의 장 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 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 할 수 있다.
- ④·⑤ (생 략)
- 제12조의4(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<u>치매로</u>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 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 •보급하여야 한다.
 - ② (생략)
- 제13조(치매등록통계사업) ① 보 건복지부장관은 <u>치매의</u> 발생과 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자료 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 집·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·관리·조사 사업 (이하 "<u>치매등록통계사업</u>"이라 한다)을 시행하여야 한다. 이

3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③인지증
<u>환자</u>
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12조의4(경도인지장애진단자
지원사업) ①
인지증 <u>으로</u>
② (생 략)
제13조(인지증등록통계사업) ① -
<u>인지증의</u>
<u>인지증등</u>
록통계사업
,

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「통계법」을 준용하며,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본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<u>치매등록</u> <u>통계사업</u>과 관련하여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 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 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3조의2(<u>치매정보시스템</u>의 구축·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<u>치매 관련</u> 사업과 제17조에 따른 <u>치매안심센터</u>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<u>치매정보시스템</u>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 략)

제14조(역학조사)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<u>치매</u>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

②인지증등
록통계사업
제13조의2(인지증정보시스템의
구축·운영) ①
인지증 관련
<u>인지건강센터</u>
인지증정보시스템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14조(역학조사) ①
<u>인지증</u>

하는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4조의2(<u>치매실태조사</u>의 실시)
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<u>치매</u>의 현황, 비용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 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 략)

제15조(자료제공의 협조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 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(제20조 에 따라 권한을 위임·위탁받 은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에서 같다)은 치매환자를 진단 • 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 기관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 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 보험심사평가원,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의 장,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 • 단체 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

· ② (현행과 같음)
제14조의2(인지증실태조사의 실
시) ①인지증
<u>.</u>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자료제공의 협조 등) ① -
<u>인지증환자</u>
인지증에

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1. 치매검진사업
- 제12조에 따른 <u>치매환자</u>의
 의료비 지원사업
- 3. 제12조의2에 따른 <u>치매환자</u>의 가족지원 사업
- 4. (생략)
- 5. 치매등록통계사업
- 6. 제13조의2에 따른 <u>치매정보</u> 시스템의 구축·운영
- 7. (생략)
- 8. 제17조에 따른 <u>치매안심센터</u> 의 업무
- 9. 그 밖에 <u>치매와</u> 관련하여 보 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- ② ~ ④ (생 략)
- 제16조(<u>중앙치매센터</u>의 설치) ① 지 보건복지부장관은 <u>치매관리에</u>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하게 하기 위하여 <u>중앙치매</u>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1. <u>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</u>에 대

-,
1. 인지증검진사업
2 <u>인지증환자</u>
3 <u>인지증환자</u>
4. (현행과 같음)
5. 인지증등록통계사업
6 <u>인지증정</u>
<u>보시스템</u>
7. (현행과 같음)
8인지건강센터
9 <u>인지증과</u>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6조(<u>중앙인지증센터</u> 의 설치)
①인지증관리-
<u>중앙인지증</u>
센터
1. 인지증관리사업수행기관

한	기술지원	밎	평가	지원	업
무					

- 2. 치매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
- 3. (생략)
- 4. 치매연구사업 지원
- 5. <u>치매관리사업</u> 관련 교육・훈련 및 지원 업무
- 6. (생략)
- 7. 치매등록통계사업 지원
- 8. 제13조의2에 따른 <u>치매정보</u> <u>시스템</u>의 구축·운영의 지원
- 9. (생략)
- 10. 제17조에 따른 <u>치매안심센</u>터 업무의 지원
- 11. <u>치매 인식개선</u> 교육 및 홍 보
- 12. <u>치매 관련</u> 정보의 수집·분 석 및 제공
- 13. <u>치매와</u> 관련된 국내외 협력
- 14. 그 밖에 <u>치매와</u>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업무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·운 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 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법인·단체에 위탁

2. 인지증관리
3. (현행과 같음)
4. <u>인지증연구사업</u>
5. 인지증관리사업
6. (현행과 같음)
7. 인지증등록통계사업
8 <u>인지증정</u>
보시스템
9. (현행과 같음)
10 <u>인지건강센</u>
<u>E</u>
11. <u>인지증 인식개선</u>
12. 인지증 관련
13. <u>인지증과</u>
14 <u>인지증과</u>
②
<u>중앙인지증센터</u>

할 수 있다.	-
③ 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	
의 설치・운영 및 제2항에 따	-
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	_
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	_
제16조의2(<u>광역치매센터</u> 의 설치)	제]
① 시・도지사는 <u>치매관리</u> 에	,
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	_
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	_
부장관과 협의하여 <u>광역치매센</u>	_
<u>터</u> 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	1
1. <u>치매관리사업</u> 계획]
2. <u>치매</u> 연구	2
3. 제17조에 따른 <u>치매안심센터</u>	3
및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	
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	
기술 지원	
4. <u>치매</u> 관련 시설·인프라 등	
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	
5. <u>치매</u>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	5
교육・훈련	
6. <u>치매환자</u> 및 가족에 대한 <u>치</u>	(
<u>매의</u> 예방·교육 및 홍보	
7. <u>치매</u>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	7

8. • 9. (생략)

10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

정하는 <u>치매</u> 관련 업무

③중앙인지증센터
제16조의2(<u>광역인지증센터</u> 의 설
치) ① <u>인지증관리</u>
<u>광역인지증센</u>
<u>터</u>
1. <u>인지증관리사업</u>
2. <u>인지증</u>
3 <u>인지건강센터</u>
4. 인지증
5. <u>인지증</u>
6. <u>인지증환자</u> <u>인지증</u>
<u>ol</u>
7. <u>인지증</u>
8.•9. (현행과 같음)
10
인지증

- 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·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「의료법」 제3조 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<u>광역치매센터</u>의 설치·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16조의3(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<u>치매</u>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(이하 "공립요양병원" 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~ ⑧ (생 략)

제16조의4(<u>치매안심병원</u>의 지정)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<u>치매의</u>
진단과 치료·요양 등 <u>치매 관</u>

	②
	광역인지증센터
	③ <u>광역인지증센터</u>
ᆀ	· 16조의3(공립요양병원의 설치
^II	
	및 운영) ①
	<u>인지증</u>
	 ② (원레리 기호)
	② ~ ⑧ (현행과 같음)
제	16조의4(<u>인지증안심병원</u> 의 지
	정) ① <u>인지증의</u>
	<u>인지증</u>

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・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 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치매 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 ②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 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 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 우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공 립요양병원이 신청하면 그 지 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 다.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치매안심 병원이 치매전문병동을 설치ㆍ 운영하거나 치매 관련 의료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・ 인력 · 장비를 확충하는 경우에 는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. ④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

<u> 관련</u>
<u>인</u> 지증안
<u>심병원</u>
② 인지증안심병원
③
<u>인</u> 지증안
심병원이 인지증전문병동
인지증 관련
④ 인지증안심병원
인지증
관련

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	보
고하여야 한다.	

- ⑤ <u>치매안심병원</u> 지정의 기준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<u>치매안심센터</u>의 설치) ① 기 시·군·구의 관할 보건소에 <u>치매예방과 치매환자</u> 및 그 가 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<u>치매안심센터</u>(이하 "<u>치매</u>안심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 - ② <u>치매안심센터</u>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
 - 2. 치매환자의 등록 관리
 - 3.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
 - 4. <u>치매</u>의 예방·교육 및 홍보
 - 5. <u>치매환자</u>를 위한 단기쉼터의운영
 - 6. <u>치매환자</u>의 가족지원사업 6의2. · 6의3. (생 략)
 - 6의4. <u>치매</u>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
 - 7. 그 밖에 시장·군수·구청장 이 <u>치매관리</u>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업무
 -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

⑤ 인지증안심병원
제17조(<u>인지건강센터</u> 의 설치) ①
인지증예방과 인지증환자
<u>인지건강센터</u> <u>인지건강</u>
<u>센터</u>
② 인지건강센터
1. <u>인지증</u>
2. 인지증환자
3. 인지증등록통계사업
4. <u>인지증</u>
5. <u>인지증환자</u>
6. <u>인지증환자</u>
6의2. • 6의3. (현행과 같음)
6의4. <u>인지증</u>
7
<u>인지증관리</u>
(3) 인지거갓센터의인지거갓

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「노인 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 요양인정의 신청, 장기요양인정 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 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(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을 안내할 수 있다.

- ④ <u>치매안심센터</u>의 시설·인력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의2(<u>치매상담전화센터</u>의 설치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<u>치</u> 매예방,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 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<u>치</u> 매상담전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 - ② <u>치매상담전화센터</u>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<u>치매</u>에 관한 정보제공
 - 2. <u>치매환자</u>의 치료·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
 - 최<u>대환자</u>와 그 가족의 지원
 에 관한 정보제공
 - 4. <u>치매환자</u>의 가족에 대한 심

센터에 인지증환자
④ <u>인지건강센터</u>
~~~~~. 제17조의2( <u>인지증상담전화센터</u> 의
설치) ①인지증
<u>예방, 인지증환자</u>
<u>인지</u>
증상담전화센터
 ② 인지증상담전화센터
1. <u>인지증</u>
2. <u>인지증환자</u>
 3. <u>인지증환자</u>
4. 인지증환자

리적 상담
5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<u>치매</u> 관
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
따른 <u>치매상담전화센터</u> 의 설치
•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
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「의료
법」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
급 의료기관, <u>치매 관련</u> 전문기
관·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
수 있다.
④ 제1항에 따른 <u>치매상담전화</u>
<u>센터</u> 의 설치·운영 및 제3항에
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
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제18조(비용의 지원) ① 국가와
지방자치단체는 <u>치매관리사업</u>
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
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
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제10조에 따른 <u>치매연구사</u>

업, 제11조에 따른 <u>치매검진</u>

<u>사업,</u> 제12조의2에 따른 <u>치매</u>

환자의 가족지원 사업, 제13

조에 따른 <u>치매등록통계사업</u>

5
o. 인지증-
<u></u>
③
 <u>인지증상담전화센터</u>
<u>인시중경</u> 급선와센니
인지증 관련
④ <u>인지증상담전화</u>
<u>센터</u>
제18조(비용의 지원) ①
인지증관리사업
1 <u>인지증연구사</u>
<u>업인지증검진</u>
<u>사업인지증</u>
<u> 환자의</u>
인지증등록통계사업

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

- 1의2. 제16조, 제16조의2 및 제
  17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,
 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
  터의 설치·운영에 드는 비용
  1의3. 제17조의2에 따른 치매상
  담전화센터의 설치·운영에
  드는 비용
- 2. <u>치매관리사업</u>에 대한 교육· 홍보에 드는 비용
- 3. <u>치매관리사업</u>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·훈련에 드는 비 용
- 4. <u>치매관리사업</u>을 수행하는 법 인·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 업에 드는 비용
- ② (생략)

제19조(비밀누설의 금지) 이 법에 저따라 <u>치매관리사업</u>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0조(위임과 위탁) ① (생 략) 저

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

1의2
<u>중앙인지증센터,</u>
광역인지증센터 및 인지건강
<u>센터</u>
1의3 <u>인지증</u>
<u> 상담전화센터</u>
2. 인지증관리사업
3. <u>인지증관리사업</u>
 4. 인지증관리사업
<u> , o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</u>
② (현행과 같음)
ll19조(비밀누설의 금지)
<u>인지증관리사업</u>
세20조(위임과 위탁) ① (현행과
같음)
2

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 - 수·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 부를 <u>치매관리사업</u>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 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 	-
		_	—	_	_	—	_	—	—	—	_	_	_	_	_	_	_	_	_	—	_	_	-	_	_	_	 	-
	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-	_	-	_	 	-
										$\overline{}$	Γ.	_	'n	-	Z	-	'n	-	1	, `	١,	J						
		_	_	_	_	_	_	_	_	٧	'	$\nearrow$	١	5	₹	끅	+	ピ	1,	^	۱-۱	깁	-				 _	
										_	_			_	_	_	_		<u>'</u>				_					
	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 	-
	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Т,					